

지적재산권

저작권 보호기간 [제18.4조제4항]

- ▣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(음반 및 실연) 보호기간 연장 : 사후(생존기간 포함) 또는 발행(또는 창작)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
 - 보호기간 연장 의무는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
- ▣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-EU FTA 및 한-페루 FTA의 선발효로 인해 저작권은 2013.7.1., 저작인접권(음반 및 실연)은 2013.8.1부터 보호기간 연장 적용
 - 저작권의 경우, 한-EU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시 반영
 - 2년의 유예기간 설정(시행일 2013.7.1)
 - * 한-EU FTA도 한-미 FTA와 동일하게 저작권에 대해 보호기간 연장 및 2년의 유예기간 규정
 - 음반 및 실연의 경우, 한-미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시 반영
 - 기발효된 한-페루 FTA에 따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
(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1조)
 - * 한-페루 FTA도 한-미 FTA와 동일하게 저작권, 음반 및 실연에 대해 보호기간 연장 및 2년의 유예기간 규정

일시적 복제 [제18.4조제1항]

- ▣ 복제의 개념에 ‘일시적’ 복제 포함
 - 복제의 범주에 영구적 복제 뿐 아니라 일시적 복제도 명시적으로 규정
※ 일시적 복제(Temporary reproduction) :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이용할 때 RAM(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)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
 - 다만,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이용(인터넷 검색·웹서핑 등)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의 경우, 권리자의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설정 가능

기술적 보호조치 [제18.4조제7항]

- ▣ 저작자·실연자·음반제작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시 민·형사 구제절차 제공
 -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
※ 기술적 보호조치(technical protection measures) :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로,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구분
 - ① 이용통제(copy/use control)적 기술조치 : 저작물 등에의 접근은 제한없이 허용되지만, 저작물을 복제·전송하는 등의 이용행위를 통제 (예)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에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마우스의 오른쪽 기능을 막아 복제를 못하게 한 것
 - ② 접근통제(access control)적 기술조치 : 저작물 등에 접근하여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보고, 듣고, 읽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 (예) 암호를 넣어 이를 해제하여야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

- 이용통제 및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장치 · 제품 · 구성품을 거래(제조 · 수입 · 배포 등)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
- ▣ 7가지 구체적 예외 및 입법 · 행정적 절차에 따른 한시적 예외 설정 가능
- 협정문에 규정된 7가지 예외
 - ①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획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선의의 비침해적 역분석 행위
 - ※ 역분석(Reverse Engineering) : 기술정보나 소스코드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분해 또는 분석
 - ② 정보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흡결 · 취약성 확인 및 분석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필요한 한도 내의 선의의 비침해 행위
 - ③ 미성년자의 유해물 접근 차단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기술 · 제품 · 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행위
 - ④ 컴퓨터(시스템 및 네트워크 포함)의 보안 상태를 점검 · 조사 ·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컴퓨터 소유자가 허락한 비침해 행위
 - ⑤ 온라인상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수집 · 유포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
 - ⑥ 법 집행, 정보 활동, 필수적 안보 등 정부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공무원 등의 합법적 행위
 - ⑦ 비영리 도서관, 기록보존소, 교육기관 등이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행위

-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절차에서 입증된 경우, 특정 종류의 저작물·실연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에 대한 예외 및 제한 설정 가능
 - 이렇게 채택된 예외 및 제한은 개선 가능한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시적 효력 발생
- ※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시(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)를 통해 6가지 추가적 예외를 규정

권리관리정보 (제18.4조제8항)

- ▣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뿐 아니라 비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도 포함
 - 기존 저작권법은 ‘전자적’ 형태의 권리관리정보에 한하여 보호하고 있었으나, 보호대상 범위를 모든 형태의 권리관리 정보로 확대
- ※ 권리관리정보(Rights Management Information) : 어떤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,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,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,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
- ▣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인·가능·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권한없이 하는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시 민·형사 구제절차 제공
- ①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·변경하는 행위
 - ② 권리관리정보가 제거·변경된 사실을 알고 동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행위
 - ③ 권리관리정보가 제거·변경된 사실을 알고 저작물 등을 배포·공연·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
- 다만, 국가의 법집행, 정보활동 및 필수적 안보와 같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및 변경은 권리관리정보의 침해에서 면책

중앙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사용 지침 마련 [제18.4조제9항]

- 중앙정부기관의 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기타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규별 규정 마련

암호화된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[제18.7조]

-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위성·케이블 신호를 불법으로 해독하는 기기 등을 이용한 무단 시청 또는 청취 및 재배포 행위와 관련한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시 민·형사 구제절차 제공
 - ① 암호화된 위성·케이블 신호를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하는 기기·시스템을 제조·조립·변경·수출입·판매·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
 - ②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된 신호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성·케이블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·재배포하는 행위
 - ③ 적법하게 해독된 위성·케이블 신호를 배포자의 허락 범위를 넘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

냄새·소리 상표 [제18.2조제1항]

-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함

수 없으며, 소리 또는 냄새로만 구성된 표지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

※ Intel 효과음/MGM 사자 울음소리(소리상표),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(냄새상표)

증명표장 제도 [제18.2조제2항]

▣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, 원산지,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도 도입

※ 증명표장의 예 : 미국의 Wool Mark, UL(Underwriters' Laboratory) 마크, Cotton Mark

상표 등록권자의 권리 [제18.2조제4항]

▣ 상표 등록권자는 제3자가 ①등록상표에 관한 상품·서비스와 “동일하거나 유사한” 상품·서비스에 대하여 ②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③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표지를 ④상업적으로 사용하여 ⑤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, 표지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 를 보유

▣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표지를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·서비스와 동일한 상품·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,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

유명상표 보호 [제18.2조제6항-제18.2조제8항]

▣ 유명표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, 등록을 요건으로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

- 등록 · 유명표장 목록 등재 · 사전인식 여부만을 근거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

-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· 서비스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, 유명상표권자와 연관성을 나타내고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면, 동 유명상표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거절 · 등록취소 · 사용금지
 - ※ 기존 파리조약 제6조의2는 동일 · 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

- 어떠한 표장을 “관련 상품 ·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대중”이 인지하고 있다면 유명표장으로 인정

- 관련되는 상품 · 서비스에 대해 유명상표와 동일 · 유사한 상표 및 지리적표시가 사용되어 ①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②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③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④유명상표권자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거나, ⑤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, 해당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· 등록취소 · 사용금지

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(제18.2조제13항)

- 상표 사용권의 효력발생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주장을 위한 요건으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
 - ※ 종전 우리 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의 경우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, 한 · 미 FTA를 통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도 침해(손해배상 청구 등)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
 - ※ 전용사용권(exclusive license) :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

지리적표시의 보호 (제18.2조제14항 및 제18.2조제15항)

▣ 지리적 표시의 출원 · 청원 절차와 관련한 의무

- 협정당사국의 관여 없이 당사국 국민이 직접 출원 · 청원하도록 허용
- 출원 · 청원의 형식적 요건 최소화
- 절차규정 공개 및 명확화
- 출원 · 청원 절차 및 처리과정 공개 등
- 출원 · 청원에 대한 공표 · 이의제기 · 등록취소 절차 마련

▣ 지리적 표시가 선행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거절 · 이의제기 · 등록취소를 할 의무

- 선행상표로는 △등록상표, △사용에 의해 권리를 획득한 상표, △유명상표가 포함

특허 대상 제외 범위 (제18.8조제2항)

▣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

- 인간 · 동 · 식물의 생명 · 건강 보호, 환경 피해 방지,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
-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 · 치료 · 수술 방법

특허취소 사유의 한정 (제18.8조제4항)

- ▣ 특허 허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서만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
※ 이에 따라 구 특허법상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 제도는 폐지

의약품 시판허가 신청 목적의 특허 실시 (제18.8조제5항)

- ▣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신청을 위하여 특허권이 있는 의약품의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, 이에 따라 생산된 시약은 시판허가 신청을 위한 정보 생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제조·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함.

※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에는 제3자(복제의약품 생산자)가 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신약의 특허기간 만료에 맞추어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판허가 획득을 위한 특허실시를 예외적으로 허용

불합리한 특허등록 지역으로 인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(제18.8조제6항 가호)

- ▣ 특허당국의 특허 심사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 존속기간 (특허등록후 출원일로부터 20년)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경우, 불합리한 지역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 - 지역기간이란, “출원후 4년 혹은 심사청구후 3년 중 늦은 날”을 초과하는 기간을 의미
 - 특허출원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지역은 연장기간에 불포함

의약품 시판허가 지역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(제18.8조제6항 나호)

- ▣ 신약 시판허가 절차 소요에 따라 특허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될 경우,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
공지예외 적용기간 (Grace Period) 연장 (제18.8조제7항)

- ▣ 특허 출원 이전 공개(공지)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발명자 자신이 공지한 발명에 한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는바, 예외기간을 12개월로 규정

의약품 자료독점 (제18.9조제1항 및 제2항)

- ▣ 의약품의 신규 시판허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안전성·유효성 자료에 대하여, 제출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동 자료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최초 개발자의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금지 (농약은 최소 10년 금지)
※ 신규의약품(농약품): 의약품(농약품)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기허가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

- ▣ 의약품의 “추가적인 적응증(適應症, indications)” 시판 허가를 위해 제출한 새로운 임상 정보의 경우 시판허가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호

WTO 공중보건 선언 재확인 (제18.11조)

- ▣ 당사국은 “WTO 공중보건 선언(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)”상 의무를 확인하고, 한·미 FTA가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

- 또한 향후 WTO TRIPS 협정이 개정되는 경우, 한·미 FTA 협정문이 개정된 TRIPS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이 신속히 협의할 것을 명시

참고: WTO 공중보건선언 주요내용

-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‘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(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: WT/MIN(01)/DEC/2)’ 채택
 - 의약품 생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회원국이 TRIPS협정의 강제 실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, TRIPS 이사회가 동 문제에 관한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2002년 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토록 규정
- 2003.8월, 일반이사회는 ‘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para.6 이행 결정(WT/L/540)’ (이하 ‘2003.8월 결정’) 채택
 - 강제실시의 대상을 의약품(pharmaceutical products)으로 규정
 - 의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회원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할 경우 TRIPS 제31조 ① 국내시장 공급 목적, ⑤ 적절한 보상 의무 면제 제공
 - 회원국들은 동 결정 내용에 기반하여 2004.6월까지 TRIPS 협정을 개정하도록 규정
- 2005.12월, 일반 이사회에서 TRIPS 개정의정서(IP/C/41) 최종 채택(WT/L/641)
 - 2003.8월 결정문 내용을 대다수 반영하여 제31조 bis와 부속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문 개정
 - WTO협정 제10.3조에 따라 회원국 2/3의 수락시, 수락회원국에 대해서만 발효
 - 2007.12.1까지 수락을 위해 개방

- TRIPS 개정의정서를 수락한 회원국이 2/3(42국)에 미치지 못하여 수락 기한을 3차례 연기하여 현재는 2013.12.31까지 개방
- 수락서 기탁 현황 : 2011.10월 현재 34개국 수락
※ 2003.8월 결정문은 개정 TRIPS 협정이 발효할 경우 효력 상실

허가-특허 연계 (제18.9조제5항)

- ▣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복제의약품 생산업자가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절차 내에서 아래 의무사항을 규정
 - ① 특허기간 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자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
 - ② 특허기간 중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없이는 후발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 조치 시행
※ 이 제도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 중에 당해 특허의 무효 또는 비침해를 이유로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, 특허기간 만료후 출시를 위해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음.
- ▣ 2011.2월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상기 ②의 시판방지조치 의무의 이행이 3년간 유예됨.

법정손해배상제도 (제18.10조제6항)

- ▣ 상표권 및 저작권(저작인접권 포함)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권리

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

-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해야 함.

참고: 양국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

○ 우리나라

- 저작권 침해 : 1천만원 이하(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)
- 상표권 침해 : 5천만원 이하

○ 미국

- 저작권 침해 : 750불~30,000불 (선의로 침해한 경우, 200불 이상/고의로 침해한 경우, 150,000불 이하)
- 상표권 침해 : 1,000불~200,000불(고의로 침해한 경우, 2,000,000불 이하)

정보제공명령 권한 (제18.10조제10항)

- 지재권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되어 침해자가 소유·통제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권리자 또는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
- 제출 대상 정보에는 침해연루자(제3자 포함), 침해 관련 상품·서비스의 생산수단 및 유통경로 관련 정보 포함

유효한 명령 불복시 제재 (제18.10조제11항 가호)

- 적절한 경우, 민사절차에서 법원의 유효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제재(벌금, 구류 또는 구금)할 수 있도록 법원에 권한 부여

비밀유지명령 위반시 (제18.10조제11항 나호)

- 민사재판 당사자, 변호인, 전문가 등 소송관계자가 재판과정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

대체적 분쟁해결절차 (제18.10조제16항)

-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법적소송 대신 절차적으로 간편한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 분쟁해결제도 허용

- 미측은 조정 등의 절차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으며, 우리측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정

※ 법적 절차와 달리 반드시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,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은 법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

일방적 잠정조치 (제18.10조제17항 및 18항)

- 일방적 잠정조치 요청에 당사국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규정
- 잠정조치 관련,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

-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,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법원에 부여

직권 국경조치 [제18.10조제22항]

-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·수출·환적물품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물품에 대해 세관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

역담보 허용 금지 [제18.10조제20항]

- 위조된 상표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,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는 역담보를 통한 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

※ 역담보제도 : 수입업자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

범죄수의 몰수 [제18.10조제27항 다호]

-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

비친고죄 [제18.10조제27항 바호]

- “상업적 규모”의 고의적인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

※ 친고죄란 고소(발)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며, 비친고죄는 고소(발)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임.

위조 · 불법 라벨 및 위조 서류 · 포장의 유통 금지 [제18.10조제28항]

- 위조 · 불법 라벨 또는 위조 포장 · 서류를 알면서 밀거래한 경우 고의적인 상표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지라도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

도촬 금지 조항 [제18.10조제29항]

- ▣ 영화관 등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없이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전송 또는 복제하기 위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
- 도촬을 시도하였으나,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

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 [제18.10조제30항]

-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면서 일정 행위를 하는 경우 면책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
-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기여도가 유형별로 다른 점을 감안,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4가지 유형별로 구별 하여 차등화된 면책 규정을 적용
 - ※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: ① 단순도관, ②캐싱서비스, ③저장서비스, ④정보 검색도구
-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 협의자의 신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수립하도록 규정